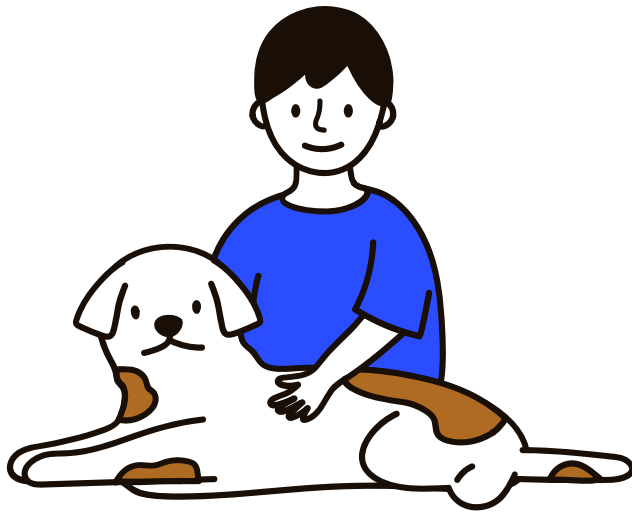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및 운영 가이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민간동물보호시설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개 또는 고양이를 20마리 이상을 보호하는 시설

“ 민간동물보호시설 ” 언제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 01 **400 마리 이상** '23년 4월 27일부터 (적용 중)
- 02 **100 마리 이상** '25년 4월 27일부터
- 03 **20 마리 이상** '26년 4월 27일부터

위 기간은 신고의무 발생 및 미신고 시 벌칙(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운영중에도 시설·운영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절차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를 제출받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신고시 증명서류의 종류

신고서에 시설·운영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해당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기준 확인자료 (시행규칙 [별표 6])

일반기준, 개별기준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도면 등

보호실, 격리실, 사료보관실, 진료실(권장), 방법시설, 출입통제(출입문 시건장치), 담장 또는 울타리(외부경계)*, 급수배수시설, 보호실 바닥, 보호실 온도습도 조절 장치, 창문(채광, 환기여부 확인용), 실외 보호시설(직사광선, 비바람방지 여부), 격리실분리 여부

* 단독건물 예외

건물 및 시설 명세서

건축물, 보호시설 및 부대시설의 명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인력현황 (자유양식)

보호시설 종사 인력 현황

보호현황 (자유양식)

보호시설 내 보호 동물 현황

운영계획서 (자유양식)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준수 여부 및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포함

운영자의 의무

사후관리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각종신고

이와 더불어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운영을 중단, 폐쇄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1. 보호시설 운영자(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보호시설의 명칭
3. 보호시설의 주소
4. 보호시설의 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

운영중단·폐쇄의 경우에는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관리 또는 처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운영·중단·폐쇄 신고서 제출 시 신고서와 함께 보호동물 관리·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등은 운영중단·영구폐쇄 및 운영재개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 시설 요건

일반 기준

- 가. 보호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진료실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 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법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시설의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단독건물 등 시설 자체로 외부인과 동물의 출입 통제가 가능한 경우는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다. 시설의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 라.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별 기준

보호실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호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격리실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 시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생애, 보호 여건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료보관실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진료실

진료실은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분리수용

장치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동물의 몸길이의 각각 2배 이상 되는 곳에 수용하도록 한다. 다만,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최소 크기는 다음과 같다.

-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 라) 고양이: 50 × 70 × 60(cm)

평평한 바닥을 원칙으로 하되,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장치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으며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장치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분뇨 등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 외부에 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운송차량

동물 운송용 차량이 있는 경우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운영 요건

일반 사항

- 가. 민간동물보호시설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나이든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해야 한다.
- 다.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및 체중에 맞는 사료 등 먹이를 적절히 공급하고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그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라.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 마.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는 보호 중인 동물의 분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자원봉사자 등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외부인 방문 시 방문자 성명, 방문일시, 방문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작성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보호 중인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개방시간을 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다.
- 바. 보호 중인 동물은 진료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동물의 복지와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을 권장한다.
- 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는 보호, 치료, 입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사항

- 아. 여러 동물을 함께 수용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의 건강상태, 나이, 성별, 동물종, 기질 등을 고려하여 분리 또는 합사해야 한다.
 2. 함께 수용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물과 사료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릇의 형태 및 개수를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개별 사항

- 가. 동물을 인수 또는 기증받은 경우 등록대상동물은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개체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처리결과 및 그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해야 한다. 만일 등록대상동물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 나. 보호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미성년자(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분양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호동물이 다시 유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보호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다. 민간동물보호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체는 별도의 냉동장치에 보관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르거나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한다.

입지 및 건축물 관련 문제의 검토

동물보호법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입지를 직접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 일반이 규제대상이 되므로, 타법령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축사육제한

개는 가축에 해당하므로 개를 보호하는 것은 가축사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환경부 유권해석)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가축사육제한 대상은 배출시설인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사례) ① 유기동물 보호소, ② 동물보호법상 신고시설,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허용하는 경우 등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상 건축물은 용도별 건축물 종류가 정해져 있으나, 건축물의 종류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어떠한 용도에 속하는지는 현행법상 해석의 영역입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에 따라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이 한정적이므로 이와 관련된 위법사항을 해소해야 합니다.

(해석례)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②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인 경우

일반가설건축물인 경우 추가적인 행정절차 없이 해당 시설을 운영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존치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3년 등), 존치기간 적용을 받는다면 존치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이거나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추진허가 또는 추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용도구역의 검토

건축물 용도에 따라 입지가능한 용도지역이 다르므로, 현재 동물보호시설의 건축물 유형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용도지역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동식물시설) 계획관리지역, 근린상업지역(조례로 제한 가능), 농림지역(조례로 허용가능), 생산관리지역(조례로 허용 가능), 생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조례로 허용 가능),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조례로 허용 가능)에 입지할 수 있습니다.

※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없습니다.

농지에서의 운영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민간동물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전용 허가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용허가등)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이 아닌 농지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최대 8년)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법률상 “동물보호센터”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동물보호센터와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할 수 없으며, 사육행위 또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라도 입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에 따라 「가축분뇨법」상 처리시설이나 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등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됩니다(「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그러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배출시설이 아니며, 「악취방지법」에서 말하는 “개 축산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EPI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